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. 6. 15 선고 2020가단316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5. 18.

판 결 선 고 2021. 6. 15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8. 30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16. 9. 12.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. 9. 13. 접수 제249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, C이 2011. 1. 24.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1163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, 항소심 법원(창원지방법원 2016나2288)은 'C은 원고에게 43,197,785원 및 그 중 34,273,656원에 대하여는 2011. 1. 24.부터 2016. 2. 19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, 8,924,129원에 대하여는 2011. 1. 24.부터 2017. 10. 24.까지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위 판결은 2018. 4. 12.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확정되었다. 그런데 C은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8. 30.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,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다음, 2016. 9. 12. 피고에게 이를 매도하였고, 피고는 2016. 9. 13.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. 따라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,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.

2. 공시송달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차진석

별지